

이므로 국회나 정부에게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건의하여 개선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셋째, 부칙 제1항(시행일)에 대한 의견

○ 동 조례 부칙 제1항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소급 입법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법률불소급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믿고 따르던 선의의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조례의 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선의의 납부의무자를 보호코자 하는 동 부칙은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이와 같은 소급 입법은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급시행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가. 수정이유

○ 안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부담금의 부과율을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과율을 조례로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차등 적용하며

○ 단지내 상가 등 주택이외의 시설에 대한 부과율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부담금의 부과율을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100분의 2(안 제3조제2항가호)

○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안 제3조제2항나호)

○ 주택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4(안 제3조제2항다호)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사업장”을 “자동차 전시용 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매매업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예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기존의 매매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